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 의무 신설〉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2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 의무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 의무 신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받은 “투자심사”를 시행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	제37조(투자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u>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u>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심사 회의록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심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②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등에 대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고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립적·객관적 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받아야 하며¹⁾,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구분²⁾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안 됨.

또한,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1) 투자심사의 실시주체에 관한 사항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투자심사결과와 통보 등)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투자심사결과와 통보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행법상 투자심사>

구분	내용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내용	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② 다음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1) 채무부담행위		
	(2) 보증채무부담행위		
방식	(3)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		
제외대상	②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		
	①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국가유산수리 사업		
	③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설립 사업		
	④ 보건소 및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심사기준	⑤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결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적정	➔	예산편성 가능
	조건부추진		
	재검토	➔	예산편성 불가능
	부적정 반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참조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⁵⁾ 결과 공개 예시('23년 2차)>

광역명 (시군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심사 결과
서울 (본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신규)	2024 ~ 2027	◦세계 30개 도시프로젝트 (30개 해외 시정부), 31개 대학 및 126팀 국내외 작가 참여 ◦전시+공식행사+학술행사+시민참여프로그램	87 (시 87)	조건부
광주 (본청)	아시아설화 신화킬러 콘텐츠 개발 (신규)	2023 ~ 2027	◦설화·신화 콘텐츠 창작 소재화 ◦공연콘텐츠(2작품) ◦메타버스(50개 캐릭터IP) ◦아시아설화·신화 축제 및 국제교류	400 (국 200) (시 200)	반려

※ 자료 :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 참조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의뢰받은 투자심사를 수행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고 함) 및 동법 시행령은 공공기관⁶⁾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4)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현재 투자심사를 수행할 때 발언요지를 간략히 정리한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고는 있으나,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5) 시·도 투자심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되고 있음.

6)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각급학교 등임(「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앙투자심사위원회⁸⁾에서 수행하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⁹⁾에서 수행함.

이때,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법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심사에 대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회의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에 회의록 작성의무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7) 「공공기록물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8)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있어 보임.

첫째, 투자심사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투자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 여부는 회의록 공개를 통해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투자심사의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검토, 부적정, 반려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경우 투자심사를 의뢰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심사 결과와 해당 결과가 도출된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 예시('24년 3차)>

연번 번호	광역명 (시군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1	○○ (분청)	○○○○○○○ 조성사업 (2단계)	2025 ~ 2027	·부지 〇〇,〇〇〇㎡ ·연면적 〇〇,〇〇〇㎡	3,117 (시비 2,301) (지방채 816)	· 종전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 미이행 ※ ① 박물관 매각계획 수립, ②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재검토, ③ 운영수지 개선방안 마련	반려

인건 번호	광역명 (시군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심사 결과	
						내 용	의견
2	○○ (본청)	○○○ ○○ 조성 (신규)	2024 ~ 2025	• 부지 〇〇〇〇㎡ • 연면적 〇〇〇〇㎡	318 (국비 126) (시비 189) (기타 3) ※ 현금출자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구체적인 수요조사 시행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시설 규모, 공간 배치 등 재검토 • 지역 창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목표 명확화 및 지원계획 마련 • 객관적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수지를 재산정하고, 적자일 경우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및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사업추진 시 ○○시 문화유산 지정 관련 법령 준수 및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재검토

※ 자료 :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의 중립적·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작성된 회의록 등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자치단체에 요청 시 사업통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전문기관¹⁰⁾에서 컨설팅 등 지원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

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

참고

투자심사의 심사주체 및 심사대상

구분	사업유형		심사 주체(기관)		
			자체심사	의뢰심사	
				시·도 (시군구→시도)	중앙 (시도/시군구→행안부)
공통	외국 자본 도입 사업		-	-	10억원 이상
광역 자치단체 (시·도)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 투자사업*	40억원 이상		-
	홍보관·행사성 사업		홍보5억원(행사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시·도 공동협력사업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	이전재원을 포함한 일반투자사업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대도시 20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	청사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
		일반 투자사업*	20억원 이상	-	-
	홍보관·행사성 사업		홍보3억원(행사1억원) 이상 ~홍보60억원(행사3억원) 미만	홍보60억원(행사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시·군·구 공동협력사업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대도시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자료 : 행정안전부